

## 남북 교역 및 경험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무역보험 활용방안\*

윤상철\*\* · 손지혜\*\*\*

### 요약

본 논문은 남북 교역 및 경험보험의 제도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남북한 간 교역 및 경험보험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역보험 활용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들을 행하고자 한다. 특히 남북간 경제협력에 따른 무역보험의 단계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단계로 경험재개 초기에는 남북한간 협정체결을 통한 적절한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지원하고, 2단계 경험의 점차 본격화되면 신용한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나아가 무역보험의 정상인수와 제3국 수출거래 인수 등으로 무역보험의 지원을 확대하며, 3단계 남북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 무역보험제도를 전수하는 등 적극적인 무역보험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급격한 개혁개방이 일어날 경우에는 북한지역에 남한기업들의 투자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위험과 정치적 위험을 우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무역보험의 적절한 지원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핵심 주제어:** 교역 및 경험보험, 남북경협, 북한의 개혁개방, 무역보험

\* 이 논문은 2018년 12월 연구보고서 “남북한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무역보험의 활용방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 제1저자,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무역학과 교수, syoon@dankook.ac.kr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무역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jihye.shon77@gmail.com

<논문 투고일> 2020.7.21 <논문 수정일> 2020.10.23 <게재 확정일> 2020.11.08

## I. 서론

1990년대 초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릴 정도로 혹독한 경제침체를 겪었으며, 공적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장마당’이 자연발생적으로 출현, 발전하게 되었다. 시장화의 진전, 무역증진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면서 1990년대말 이후 북한경제는 평균적으로 양(+)의 실질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 과정상 2000년대에 남북한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급증했다. 2010년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이외 지역과의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된 와중에도 개성공단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남북한간 교역액은 2016년초 개성공단사업이 전면 중단될 때까지 증가해 왔다. 그동안 남북한간 교역은 제조업 제품 중심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 양질의 고용 증진, 외환 가득액 확보 등 측면에서 북한경제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Mah, 2018). 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온 대중국 수출이 광산물 중심인데 따라 실제 북한의 경제성장에 구조적으로 크게 기여해 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행해지는 점과 대비된다 (Szalontai and Choi, 2013).

그러나, 남북한간 경제협력과 2010년대 그 핵심이었던 개성공단사업은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크게 영향받아 왔다. 예를 들어, 2013년에는 북한정부에 의해, 그리고 2016년에는 남한정부의 결정에 의해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와 같은 비상위험의 발생에 대비하여 교역 및 경험보험제도가 운영되어 왔고, 실제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정부는 개성공단 교역/투자 참여 기업들의 손실 보전을 위해 애써 왔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비상위험의 실제 발생으로 인해 교역/투자 참여 기업들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기존 교역 및 경험보험은 상당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여 왔다. 첫째, 경험보험의 보험금지급 한도가 7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부보율이 100%가 아니라 90%라는 점 등 경험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둘째, 경험보험의 담보대상이 초기의 투자자산만 의미하고, 기업들이 실제 보상받고자 하는 경영활동 중 발생한 유동자산 등 실질적인 투자실물자산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 셋째, 사업중단기간 동안 기업이 입은 영업손실 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가치 이외에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 넷째, 정치적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험의 적정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다섯째, 정부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도 보상을 해준 점,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시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보상조치가 없었던 점 등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이 부족하다. 특히 전자의 경우 moral hazard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는 기존 교역 및 경험보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역보험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들을 행하고자 하는 데에 연

구의 목표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II장에서 교역 및 경협보험의 제도적 특징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교역 및 경협보험제도를 운영해 온 사례와 그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IV장에서는 무역보험이 교역 및 경협보험에 대해 갖는 의미와 교역 및 경협보험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무역보험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V장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 시 무역보험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교역 및 경협보험의 제도적 특징

### 1. 교역 및 경협보험의 법적 근거

남북협력기금법은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 1호의 2에서 ‘경영 외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 나. 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등의 반출입 제한, 다.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라.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를 제외한 경영 외적인 사유 중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정지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경협보험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1> 참조).

**[표 1] 남북협력기금법상의 개성공단 지원 보험제도**

보험 제도	보장 내용	보장 한도
교역보험	비상위험으로 인해 반출, 반입, 위탁가공 중 입는 손실	기업당 10억원 부보율 70%
경제협력 사업보험	북한 수용·송금제한, 당국간 합의 파기 등으로 인해 영업불능,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손실	기업당 70억원 부보율 70%
원부자재 반출보험	비상위험으로 제품 등의 반입이 연속 2주 이상 중단되어 발생한 원부자재 및 위탁가공비 손실	기업당 10억원 부보율 10%
납품이행 보장보험	비상위험으로 연속 2주 이상 반입이 중단된 경우 이에 따른 손실	기업당 10억원 부보율 10%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18.11.

또한 동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통일부장관은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08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고시하고 있는데, 최근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르면,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하 “교역·경협보험”이라 한다)을 기금의 업무로 규정하고(동 규정 제4조 제8호), 구체적인 운용규정을 두고 있다 (이지현, 2018).

이 중 본 논문의 관심대상인 경협보험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 규정 제30조 제2호에서 기금과 경협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가. 투자원금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한 후 관련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다. 해당 원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그 밖에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라.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마.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의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은 제31조 보험계약 체결한도, 제32조 보험계약대상, 제33조 보험계약신청자 등 제34조 보험계약 및 접수업무 위탁, 제35조 부보유, 제36조 보험계약 조건, 제37조 보험금 지급절차를 규정하면서,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이하 ‘경협보험취급기준’이라 함)을 정하여 경협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취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무일, 2009).

## 2. 교역 및 경협보험의 가입절차

위와 같은 법적근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경협사업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음 (경협보험취급기준 제11조) → 보험계약체결신청(보험계약신청자) → 통일부장관의 승인 (신청 후 30일내) → 한국수출입은행의 보험증서 및 약관 교부 (보험계약신청자) → 보험계약체결 (동 기준 제6조 제출서류 요건) → 보험관계 성립 (동 기준 제15조 제4항 한국수출입은행이 보험계약자로부터 투자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보험관계성립여부 서면으로 통지)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의 절차로 진행된다.

즉 보험계약자는 경협사업 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로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매 회계연도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피투자

회사 등의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확약서, 2. 필요한 경우 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의 피투자회사 등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을 보장하는 피투자회사 등 명의의 실사보장각서 (단, 남한주민이 단독 투자한 경우는 보장각서를 면제 가능), 3. 보험금 지급시 기금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북측 투자계약 상대방 명의의 대위권보장각서 (합작·합영투자에 한한다. 단, 경제특구지역내 투자의 경우는 대위권보장각서를 면제가능)”를 제출하여 기금관리수탁자(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동 기준 제6조). 보험계약 체결 후 바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15조에 규정된 투자입증서류를 제출한 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도록 위 투자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5조 제6항).

### 3. 경험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경험보험 취급기준 제7조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위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에 따르면 아래 <표 2>에 나타나듯 경험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은 수용위험, 송금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불가항력 위험으로 크게 5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표 2] 경험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의 내용**

담보하는 위험	경험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의 내용
수용위험	북한당국에 의한 투자재산의 몰수·박탈 또는 권리행사의 침해
송금위험	북한당국의 취득금 관리 또는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의 송금 불능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파산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약정불이행위험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수정 또는 북한당국이 해당 경험사업에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불가항력위험	남한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기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여기서 수용위험이란 “북한당국에 의한 투자재산의 몰수·박탈 또는 권리행사의 침해”를 의미하며, 송금위험은 “북한당국의 취득금 관리 또는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의 송금 불능”, 전쟁위험은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파산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약정불이행위험은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수정 또는 북한당국이 해당 경험사업에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불가항력위험이란 “남한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기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의미한다.

위와 같이 경험보험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한 담보위험 중 수용위험, 송금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은 북한당국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이며, 불가항력위험은 남한당국의 사업중단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2010년 5.24.조치 및 2016년 2월 남한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에 따른 손실은 불가항력위험, 그리고 2013년 4월 북측의 개성공인가동중단은 북한당국에 의해 발생된 약정된 불이행위험에 따른 손실에 해당한다.

#### 4. 보험료 산정의 기준

경험보험 취급기준 제10조는 보험료에 대하여 ‘별표2’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에 따르면, 보험금액 50억원 이하 부분의 보험요율은 연0.5%~연 0.8%의 기본요율에서 할인율(기본요율×적용율)을 공제하여 적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률이 25%로서 보험료 할인적용을 받으며, 보험금액 50억 원 초과 부분의 보험요율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한 보험료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종현, 2017). 현재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보험계약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기업 연 0.6%, 중소기업 연 0.45%이고,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업 연 0.75%, 중소기업 연 0.6%이다.

#### 5. 보험금 지급의 절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경험보험 취급기준 규정(제24조)은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역보험 취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위 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절차는 사고발생통지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4조 내지 제85조, 경험보험 취급기준 제24조) → 사고조사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6조 내지 제90조, 경험보험 취급기준 제24조) → 보험금 지급신청 및 접수 (경험보험 취급기준 제25조) → 지급심사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2조, 경험보험 취급기준 제28조)의 순서로 진행된다.

경험보험의 경우 지급신청의 유예기간이 1개월 있다는 점(경험보험 취급기준제25조), 보험금의 가지급금으로 보험금액의 3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점 (동 기준 제26조), 피투자회사등의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 기준 제27조), 보험의 대상이 되는 손실액 산정에 있어 교역보험과 마찬가지로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나 (교역보험 취급 기준 제100조), 손실액 계산시 차감토록 하고 있는 사고직후 사고지분·주식 또는 사고배당금청구권 평가액에 대하여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관리 및 대위권행사를 통해 회수토록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지현, 2018).

그리고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순손실액에 부보율을 곱한 것이 보험계약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된다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0조 제2항). 경험보험의 경우 최저 보험금 규정을 두어 1) 보험계약자와 연속 3년 이상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투자회사 등의 잔존가치로 산정된 보험금이 본 기준에서 정한 최저보험금 (연속 3년 : 보험금액의 1%를 곱한 금액, 2) 연속 3년 이후 : 매년 보험금액의 0.3%를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최저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경험보험 취급 기준 제29조).

## 6.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사업이 재개된 경우의 처리

경험보험 가입자들이 유의해야 할 규정으로, 기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업재개시 사업을 중단한 기간 동안의 손실액을 공제한 후, 다시 한국수출입은행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험보험 취급기준 제30조). 한편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제 보험금 지급 및 반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기업들은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하면서도, 반환해야 할 보험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중단으로 입주기업에 지원된 경험보험 등 지원금은 2016년 이후 총 5,833억 원이고, 이중 토지와 건물 등 투자자산에 지원된 금액은 3,945억 원, 유동자산에 지원된 금액은 1,764억원인데, 위 반환 규정 및 경험보험 약관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재개 시 재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2018년 5월 기준으로 기업들은 약 4,90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약관상 반납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폐쇄조치로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일괄 반납은 너무 큰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입장이다. 또한, 1달 이내에 반환하지 못할 경우 최대 8%의 연체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기업의 불만이 높다 (이지현, 2018).

## 7. 구동독과 개성공단의 경험보험 비교

통일 전 동독과 현재의 개성공단에서 각각의 경험보험을 비교해 보면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 첫째 경험의 형태는 국내 거래로 간주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었다. 둘째, 경험의 위험을 정치적 위험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정책보험으로 운영하였다. 왜냐하면 민영 보험회사는 정치적 위험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신동호, 2010).

그러나, 20년 전의 동서독 경험과 현재의 개성공단 경험보험은 제반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동독은 서독의 직접투자를 원하지 않아서 서독의 원자재, 자본재의 간접투자만 이루어 졌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에 남측 제조업의 직접투자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를 활용하는 직접생산에 대한 보험보호는 동독의 경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독 기업의 신용위험(파산, 지급불능위험)은 동서독 경험보험에서 인수되지 않아서 서독의 민영 보험회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인수하였다. 이에 반해 개성공단은 북측 기업과 직접거래가 없으므로 북측 기업의 지급불능위험을 담보하는 신용위험은 해당사항이 없다(허인, 2018).

**[표 3] 구동독과 개성공단의 경험보험 비교**

	구동독	개성공단
경험의 형태	국내거래 간주 비과세	국내거래 간주 비과세
경험의 종류	서독의 간접투자 (원자재, 자본재)	남한 제조업의 직접투자
신용위험	민영 보험사가 제한적 선별인수	한국수출입은행의 경험보험
정치적 위험	Hermes Burschaft의 경험보험	한국수출입은행의 경험보험
통일과도기	6개월 동안 국가가 지급보증	해당사항 없음
손해사정	동독 보험사가 손해사정 수행	손해사정 어려움
합작보험사	통일전 동서독 합작보험사 설립	합작보험사 논의 없음

자료: 신동호 (2010)에서 재인용

특히 동서독 통일 전에 동독지역에 서독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위험과 정치적 위험을 서독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 사례가 있다. 이것은 정치적 위험의 보험 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신동호, 2010, 허인, 2018).



### Ⅲ. 교역 및 경험보험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

#### 1. 교역 및 경험보험의 운영 사례

##### 1) '5.24 조치' 경험보험금 지급 사례

2010년 3월 천안함사건 이후 남측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5.24 대북조치를 실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건축하던 6개 기업이 건축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개성공단 반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되었다. 경험보험 역사상 최초로 약관에서 인정되는 보험사고로 인정되어 43.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통일부, 2011).

<표 4> 개성공단 보험금 지급 및 반납 현황

(단위: 억원)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		보험금 반납		보험금 잔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2010년 5.24 조치	7	50	-	-	7	50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59	1,761	44	1,307	19	454	
세부내역	전액 반납	40	1,232	40	1,232	-	-
	일부 반납	4	108	4	76	4	32
	전액 미반납	10	363	-	-	10	363
	사업포기	5	59	-	-	5	59
2016년 개성공단 폐쇄 <sup>주)</sup>	104	2,945	-	-	104	2,945	
세부내역	가지급금	26	486	-	-	26	486
	본지급금	104	2,459	-	-	104	2,459
합계	170	4,756	44	1,307	130	3,448	

주: 1) 가지급금 및 본지급금을 모두 수령한 기업은 1개사로 간주

2) 2018년 1개 업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이 추가되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보험금 지급업체는 총 105개 업체임

자료: 안경철·정인영 (2018)에서 재인용

##### 2)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경험보험금 지급 사례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2013. 4)로 인해서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험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별표1(담보위험의 범위)의 “약정불이행 위험”에 해당됨에 따라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을 거쳐 경험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신동호·이재열, 2016). 59개 기업에 대해 1,76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됨과 동시

에 기업의 공단 내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166일 만에 개성공단이 재개되자 대부분의 기업은 보험금을 반납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을 재개하였다. 일부 기업은 보험금을 대출금 반환, 긴급자금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보험금을 반납(약 418억 원)하지 못하고 있으나 분할납부 약정을 맺어서 반납하기로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2015. 8).

### 3) 개성공단 기업들의 인식

기업들은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 수령 및 반납 절차 등을 경험한 후에 경험보험이 지분, 권리 등의 투자보험이며, 가동중단 동안에 발생한 휴업손실은 보장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험보험을 운영하는 수출입은행이 약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기업은 경험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경험보험 자체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기업들 스스로 경험보험 보장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경험보험에 대한 불만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동호·이계열, 2016).

## 2. 교역 및 경험보험 운영에 따른 문제점 분석

경험보험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그 담보 위험이 수용위험, 송금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불가항력위험이며, 북한 당국의 정책이나 법률적용, 북한 당국에 의해 유발된 전쟁 등의 위험, 북한 당국에 의한 일방적인 약정불이행, 남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정치적 위험을 담보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2010년 남한의 5.24.조치,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조치와 2016년 남한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이후, 현행 경험보험의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경험보험의 보험금지급한도가 7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부보율이 100%가 아니라 90%라는 점 등 경험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경험보험의 담보대상이 투자자산만 의미하고, 기업들이 실제 보상받고자 하는 투자실물자산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사업중단기간 동안 기업이 입은 영업손실 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가치 이외에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넷째, 정치적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험의 적정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정부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도 보상을 해준 점,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시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보상조치가 없었던 점 등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이 부족하며, 전자의 경우 moral hazard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 1) 남북협력기금의 재원부족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사태로 인하여 기업들의 피해신고금액은 9,649억원이나 검증기관에 의하여 검증된 피해금액은 7,86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일부, 2018).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은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일정한 위험을 감내하고 있는데,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북경협을 위하여 희생을 감내하는 기업이 감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북화해와 평화를 목표로 하는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기업의 위험을 담보하는 경험보험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사태로 입은 피해금액 가운데 불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은 남북경협보험의 불합리하고 불충분한 약관규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북경협보험약관에는 실물자산에 대한 보장기능이 불충분하며 이익상실에 대한 보장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험보험의 약관을 개정하여 실물자산에 대한 충분한 보장기능을 회복하여야 하며 이익상실에 대한 보상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충분한 보상을 위한 약관개정작업이 그간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경험보험의 근거가 되는 남북협력기금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경협보험의 운영기반이 되는 남북협력기금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무역보험의 인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적은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과 무역보험의 인수실적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출연금	공자기금예수금	운용수익등	총조성액
합계	5,299,967	2,744	8,414,674	993,054	14,710,439
2020. 6	59,453	11	167,000	6,389	232,853
2019	100,000	-	203,000	6,574	309,574
2018	63,711	11	278,400	12,153	354,275
2017	183,000	1	765,000	9,631	957,632
2016	92,500	1	207,000	27,399	326,900
2015	93,203	238	90,500	19,863	203,804
2014	93,400	-	228,600	47,304	369,304
2013	105,500	3	530,000	162,300	797,803
2012	112,800	2	400,000	51,236	564,038
2011	-	2	104,400	38,276	142,678
2010	-	-	875,000	51,238	926,238
2009	-	56	81,000	74,354	155,410
2008	650,000	52	147,500	49,274	846,826
2007	500,000	75	584,591	38,859	1,123,525
20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20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2004	171,400	1	310,000	38,372	519,773
20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2002	490,000	77	505,000	42,035	1,037,112
2001	500,000	1,079	310,000	29,406	840,485
20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7
1999	-	3	149,831	23,013	172,847
1998	-	-	-	40,280	40,280
1997	50,000	288	-	27,874	78,162
1996	100,000	132	-	18,409	118,541
1995	240,000	119	-	14,589	254,708
1994	40,000	1	-	9,387	49,388
1993	40,000	3	-	4,778	44,781
1992	40,000	-	-	5,118	45,118
1991	25,000	-	-	237	25,237

출처: 통일부, 남북협력기금통계, 2020.6 (2020).

[표 6] 무역보험 종목별 / 연도별 인수실적

(단위: 억원)

연도	단기	중장기	신용보증	환변동	계
1992	16,041	1,994	-	-	18,036
1993	24,951	5,207	169	-	30,327
1994	35,577	9,372	687	-	45,635
1995	89,115	9,317	2,014	-	100,446
1996	109,070	12,857	2,160	-	124,087
1997	131,321	17,900	3,844	-	153,064
1998	241,450	21,995	18,251	-	281,696
1999	277,467	36,759	27,465	-	341,691
2000	290,273	30,522	27,298	11,085	359,177
2001	296,888	20,268	26,315	29,691	373,161
2002	337,692	15,306	18,782	48,625	420,405
2003	391,493	20,063	17,821	71,977	501,353
2004	515,300	28,436	15,403	69,773	628,912
2005	556,049	37,642	14,283	123,606	731,580
2006	607,140	43,683	13,154	162,709	826,685
2007	652,593	82,298	11,590	169,793	916,275
2008	947,120	190,004	15,625	145,268	1,298,017
2009	1,443,997	131,841	59,637	14,128	1,649,603
2010	1,624,168	160,349	61,962	27,043	1,873,522
2011	1,706,123	138,286	59,093	18,292	1,921,795
2012	1,773,085	177,175	61,276	11,468	2,023,004
2013	1,799,079	153,269	67,253	17,202	2,036,802
2014	1,694,183	127,940	64,934	15,096	1,902,154
2015	1,494,366	118,441	56,291	12,262	1,681,359
2016	1,394,770	112,568	47,278	11,060	1,565,677
2017	1,321,246	90,922	30,993	3,526	1,446,687
2018	1,351,620	99,951	26,955	7,748	1,486,275
2019	1,407,637	112,351	29,253	9,101	1,558,342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정보통계, 2020.6 (2020).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된 이래 위의 <표 5>에 나타나듯 2020년 6월 현재 총 14조 7,104억원이 조성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자체수입은 6.75%에 불과한 반면 정부출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차입금은 총 93.25%로 48개 기금 전체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무역보험에서의 무역보험기금은 무역보험사업의 기본담보력으로서의 기능 및 대형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역보험기금의 경우 정부출연금은 3% 내외에 불과한 점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경

우 자체수입이 7%에 불과하고 나머지 93%는 대부분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위 <표 6>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무역보험의 경우에는 2019년 기준 유효계약액이 155.8조원에 달하고 있다.

경험보험은 국내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험보험은 남북간의 투자보장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야기한 비상위험을 남한정부가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향후 북한이 야기한 전쟁 등의 비상위험이 발생하여 많은 기업들의 대규모 손실을 일시에 보상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지급불능 사태의 가능성도 예견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안택식, 2017).

## 2) 투자실물자산에 대한 불충분한 보장

경험보험은 북측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지분, 대부, 권리 등의 투자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다.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제30조에 따르면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손실액으로 간주하여 보상하되 보험성립금액을 한도로 한다. 즉 지분 등 투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순자산평가액에 대한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사업정지기간 평균 6월물 국고채 유통수익율)을 손실액으로 간주한다. 대부 등 투자의 경우에는 사업이 정지되기 전 또는 정지된 기간 중 지급기일의 도래된 미회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을 손실액으로 간주한다. 권리 등 투자의 경우에는 사업재개에 따라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아 손실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안택식, 2016).

경험보험취급기준 제30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험보험은 경험사업자가 초기에 투자하는 고정자산 또는 자본금을 대상으로 결정하는데, 보험금 수령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들이 초기 투자금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해도 초기에 투자한 고정자산의 규모보다도 경영활동 중 발생한 유동자산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투자자의 피해를 경험보험으로 보상하기에는 불가능할 수 있다 (유창근, 2015). 즉, 경험보험은 북측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지분, 대부, 권리 등의 투자손실만 보상하며,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투자실물자산에 대한 보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신동호·이재열, 2016). 경험보험금 기준은 자산 기준이 아닌 장치차입금과 등록자 본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계설비 등 대규모 장치산업을 투자한 기업들의 경우 실제 기업가치 또는 투자내용이 비해 낮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경험보험은 장부가치 이외에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김주연, 2011).

### 3) 영업손실 및 간접위험에 대한 무보장

경험보험은 북한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기업의 지분, 대부, 권리 등 투자손실 만을 보상하며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가동중단으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영업손실의 보상을 둘러싸고 지급되었던 보험금을 반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던 경험이 있다.

2013년 4월에 발생한 북측의 일반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조치로 인해서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험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경험보험 취급기준(담보위험의 범위)의 “약정불이행위험”에 해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험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9개 기업에 대해서 1,76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기업의 공단 내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166일 만인 2013년 9월에 개성공단이 재개되자 대부분의 기업은 보험금을 반납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을 재개하였다. 일부기업은 보험금을 대출금반환, 긴급자금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보험금 약 418억원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으나 분할납부약정을 맺어서 반납하기로 했다 (신동호·이재열, 2016). 통일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조사결과 총 234개 업체가 실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총 1조 56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증빙금액으로 확인된 피해금액이 약 7,000억원에 이르나 59개기업에 대하여 투자금 1,761억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므로 나머지 약 5,300억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안택식, 2017).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한 기업의 손실실태의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총 303개 조사대상 기업중 261개 업체가 2016년 신고한 피해금액은 9,446억원이며,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피해금액은 7,779억원이었다. 확인금액 중 투자자산은 5,088억원 (신고 5,654억원), 유동자산은 1,917억원 (신고 2,317억원), 기타 위약금 및 개성현지미수금은 774억원 (신고1,475억원)이었다 (통일부, 2016). 기업의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하여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 특별지원차원에서 교역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즉 기존 교역보험지원을 70%, 지원한도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교역보험 도입 당시에 비해 증가한 교역량을 감안하여 한도를 22억원으로 높이기로 하였다 (통일부, 2016). 2016년 6월까지 정부가 지원한 것은 경험보험에 가입한 86개사에 대한 2,536억원 지원이었다 (통일부, 2017).

### 4) 정책보험으로서의 적정성 부족

현행 경험보험이 담보하는 정치적 위험이 발생하여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때, 남북협

력기금의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재원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 보험금 지급한도가 현실적으로 기업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점, 정치적 위험을 담보하는 정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 보험의 적정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지현, 2018, 허인, 2018).

경험보험의 한도총액은 7,000억원이며 기업별 가입한도는 70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한도로는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경험보험에 이미 가입한 기업들은 기업 당 70억원으로 제한된 보상한도로는 투자자산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현대아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애메슨 퍼시픽 등 대북투자규모가 컸던 기업들은 한도액 때문에 경험보험에 가입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안택식, 2017).

개성공단의 경우 투자규모가 작은 노동집약적 업종이 대다수여서 현재의 보상한도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기술집약적 업종들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투자규모가 커져서 현재의 보상한도로는 충당할 수 없으므로 경험보험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보상한도를 책정한 것은 경험보험의 보상을 남북협력기금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무역보험, 국가보험제도 등의 제도를 통하여 보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창근, 2015).

한편 현재의 경험보험은 경제특구지역은 90%,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은 70%, 교역보험은 일괄하여 70%를 부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으로의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보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안택식, 2016). 예컨대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통상 가입시 10%의 희망이익을 포함하여 110%를 부보하고 있고, 화재보험의 경우 시가대비 보험가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설치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현 시가보다 높은 재설치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창근, 2015). 현재의 경험보험은 위험요인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정부가 지므로 일부에서는 그 위험을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경험사업이 남북한의 평화정착 및 공존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긴장이 해소되어 평화적인 공존이 제도적으로 가시화될 때에는 보험요율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유창근, 2015).

##### 5) 정책집행의 일관성 및 형평성 부족과 Moral Hazard(도덕적 해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기는 하나, 정부지원의 형평성이나 이로 인한 보험가입 기피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는 정부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도 보상을 해준 점,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시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보상조치가 없었던 점 등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향후 이러한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이지현, 2018). 경험보험/교역보험 미가입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해 준 점은 미래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게 되겠기에,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제한적으로 진전되었을 경우 보험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가입하는 ‘체리피커(cherry picker, 이익만 취하는 소비자)’가 나타난 것을 지적한 연구도 있었다 (김종현, 2017). 즉 남북관계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만 가입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통행금지 조치가 있었던 2008년 이후 보험가입자수가 급격히 늘어난 전례라든지,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인 경우, 보험가입자 중 2개사가 전면 중단 발표 직전인 2017년 2월 초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 역선택의 실제사례가 발생한 것이 그것이다 (이지현, 2018).

## IV. 교역 및 경험보험 운영에 있어서 무역보험 활용방안

### 1. 무역보험제도가 교역 및 경험보험에 대해 갖는 의미

#### 1) 대북무역보험 활용의 필요성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사태로 정부는 2017년까지 피해기업에 대하여 현금으로 5,173억원을 지원하고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 6,533억원, 세제지원 1,113억원, 보조금 282억원 등 총 1조 3,101억원을 지원하였다 (통일부, 2017). 그러나 이 가운데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경험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은 투자금에 대한 손실보상 3,801억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총지급액 1.31조원 가운데 약 30%에 이르는 3,801억원 만이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경험보험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70%에 이르는 지원금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출연한 결과가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되어 개성공단 등이 정상화될 경우에는 비상위험에 대한 부보영역을 확대하여 국가의 특별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험보험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안택식, 2017).

무역보험은 국제거래에서 수반되는 위험 가운데 일반 해상보험과 같은 일반 사보험에서 인수되기 어려운 위험, 즉 전쟁 등 비상위험 또는 수입자 계약 파기 등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으로서 국가가 운영하는 일종의

**[표 7] 무역보험 및 경험보험의 부보율 및 보험료 비교**

	무역보험	경험보험
부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 100%, 대기업 95%이내, 중계무역95%이내</li> <li>• 중장기 수출보험: 90%이내 (중소기업은 95%이내)</li> <li>• 해외투자보험 : 대출금보증채무 100%, 주식 95%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교역보험, 개성공업지구원부자재 반출보험, 경제협력사업 보험 등 70%</li> <li>• 경제협력사업보험 중 경제특구 지역 90%</li> </ul>
보험료 (수수료)	<p>보험료 산정기준은 결제조건, 신용등급, 보험기간 등이며 보험요율은 결제방식과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 소재국의 국가등급)과 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화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수출보험에서 개별보험, T/T거래, 수입자 신용 D등급, 결제기간이 60일인 경우 보험요율은 1%내외</li> <li>• 중소기업의 경우 15%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교역보험 : 연 0.3%~0.5%</li> <li>• 경제협력사업보험 : 0.5%~0.8%</li> <li>•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연 1%</li> <li>• 모든 보험은 중소기업의 경우 25%할인</li> </ul>

출처: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go.kr) 및 통일부 홈페이지 참조(www.unikorea.go.kr), 2020.

공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역보험법을 기초로 무역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종전 수출보험제도에 수입보험을 추가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 무역보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하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험보험과 무역보험은 둘 다 대외거래시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비영리 정책보험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 경험보험은 남북 경험에만 한정되어 적용되고 비상위험 외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지만, 무역보험은 수출 및 해외교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외적 거래 전체에 적용되며 신용위험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험보험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이하 안택식, 2017). 첫째, 부보율 확장 효과가 있다. 현행 경험보험은 부보율이 70-90%에 불과하나 무역보험은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100%의 부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경험보험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자연적으로 부보율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현재 경험보험금액의 한도가 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험의 한도로는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경험보험에 이미 가입한 기업들은 기업 당 70억원으로 제한된 보상한도로는 투자재산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현대아산, 토지주택공사 및 에머슨 퍼시픽 등 대북투자규모가 컸던 기업들은 한도액 때문에 경험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무역보험의 경우 이러한 보험금액의 한도가 없으므로 경험보험에 가입을 꺼리는 기업들의 보험수요

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남북협력기금의 규모에 비하여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할 경우 보험재정부족으로 인한 보상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2016년 2월 개성공단중단의 사례처럼 긴급사태의 경우 세금에서 보상 지원하는 규모가 축소되고 경험보험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역보험기금은 남북협력기금에 비하여 약 2배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북협력기금에 비하여 자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 대북무역보험활용의 법적 근거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은 남북 간의 투자, 물품교역, 그 밖의 경제협력사업 등에 대해 무역보험법을 포함, 외국환 거래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의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역보험은 북한과의 반출입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임성택, 2011).

대북 무역보험 활용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법적 근거에는 지난 1990년 10월 1일 상공부에서 마련된 “남북교역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인수방침”(상공부 출이 21123-1498)이 있다. 위 지침은 전체인수한도 1천만 달러 (업체당 3백만 달러), 대상기업은 포괄보험 이용업체로 하며, 보험요율은 인수 가능한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신용조사 및 사고조사는 그 절차를 간소화 또는 생략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웅, 2010). 그런데 위 인수방침에 따르면 북한은 신용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인수가 능 등급으로 잠정 분류되고 있으며, 비상위험으로 인한 결제기간 연장 중에 있거나 보험금 지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출보험공사는 동 위험을 계속 인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한국무역보험공사 측에 일방적인 부담을 주는 인수방침이라고 한다 (정웅, 2010). 따라서 향후 무역보험제도를 경험보험에 활용한다면 그 선결조건으로 무역보험상의 계약한도를 조정하고 객관적인 조사평가와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인수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김주연, 2011). 남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현재 경험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접수용 이외에 간접수용에 대한 보험,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이익상실 및 투자실물자산을 보장하는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동호·이재열, 2016).

## 2. 교역보험/경험보험제도 운영시 무역보험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 1) 투자실물자산보장과 단기수출보험

경험보험은 북한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지분, 대부, 권리 등의 투자손실만을 보상하며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투자실물자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수령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들이 초기 투자금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해도 초기에

투자한 고정자산의 규모보다도 경영활동 중 발생한 투자실물산의 규모가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피해를 경험보험으로 보상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이 증축하는 공장이나 최신 기계설비 등의 투자실물자산에 대한 복축의 정치적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보상을 받기 위한 대안으로서 현행 북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실물자산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상당한 장애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실물자산보장보험은 경험보험의 특별약관의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신동호·이재열, 2016).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실물자산에 대한 위험의 경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한의 모회사가 개성공단 자회사 법인의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고 이를 재가공한 뒤 내수 및 수출 수요에 충당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경우 국내의 매수채권 미회수 위험담보가 필요하다. 이 때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물품을 수출한 후에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신용보험제도인 단기수출보험을 활용하여 위 위험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김주연, 2011; 박명섭 외, 2014; 허인, 2018).

아울러 개성공단의 자회사가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개성공단으로 원재료의 조달이 필요한 바 이 경우에도 물품의 멸실위험에 대한 담보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하여 단기수출보험으로 무역보험공사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품에 대한 무역보험에 의한 지원에 의하여 현행 경험보험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는 실물자산에 대한 일부 보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안택식, 2017).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의 활발하게 전개된다면 남북교역에 대한 위험담보와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과정에서 보험의 담보범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영업손실 및 간접위험의 보상과 해외투자보험

현행 경험보험은 기업의 투자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할 뿐 비상위험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경험보험이 비상위험으로 인한 피해보상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비상위험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무역보험공사에 의한 해외투자보험은 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 자원보유국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역보험상품이다. 투자수혜국에서 전쟁이나 혁명 또는 내란, 투자수혜국 정부가 기업이 투자한 해외투자설비를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등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면 해외투자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투자원금

이나 이자 및 배당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남북경협에 이러한 해외투자보험에 의하여 지원될 경우 현재의 경험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기업손실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택식, 2017).

해외투자와 관련된 위험은 오늘날 오히려 몰수 현지화의 방향이 보다 교묘하게 이루어져 차별과세, 벌금, 가격통제, 외국인 공용제한, 이윤송금제한, 외화사용 제한 등 간접수용의 형태가 나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간접수용의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현행 해외투자보험계약 약관상의 담보위험 중 수용위험의 범위에 간접수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약관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또한 해외투자는 통상 그 기간이 장기이므로 투자환경 또는 투자계획의 변경도 탄력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보험공사에 의한 해외투자보험이 남북경협에 적용될 경우 경험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간접위험이 보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업손실에 대한 보상범위가 넓어지는 혜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안택식, 2017).

### 3) 중장기 프로젝트 인수와 중장기 수출보험

북한의 자원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위험의 경우에도 남북협력기금의 경험보험에 의해 담보되고 있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장기수출보험 또는 해외투자보험 등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박명섭 외, 2014).

특히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지원을 위한 철도, 도로의 건설 등 중장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북한의 정치적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민간금융기관 및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를 적극 촉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높다.

### 4) 정책보험의 적정성 제고와 무역보험

남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필요성은 경험보험에의 낮은 가입율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경험보험의 가입율은 2015년 7월 현재 62%이며 북한위험이라는 특수상황과 입주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입율이 낮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3년 경험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개성공단이 재개됨에 따라 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경험보험 재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본잠식상태인 기업들도 보험가입이 제한되고 있다 (신동호·이재열, 2016). 경험보험의 주관당국이 여러 가지 사유로 경험보험 인수를 거절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 관련 위험은 민간보험시장에서 인수거절되는 시장실패현상인데 정책보험에서도 인수거절되는 경우에 해당기업들은 무보험상태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동호·이재열, 2016).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남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다

고 하겠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중단사태로 인하여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하여 현금,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을 합하여 1조 2,689억원을 지원하였다. 이 가운데 유동자산피해에 대하여 1,248억원을 지원하였다. 정부가 피해기업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액 가운데 기업이 가입한 경험보험에서 지급한 투자 보상액은 3,801억원으로 전체 보상지원금의 3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보상금액의 70%는 국민 세금에서 부담했다는 결과가 된다. 정부는 기업의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하여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 특별지원차원에서 교역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즉, 기존 교역보험지원을 70% 및 지원한도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교역보험도입 당시에 비해 현저히 확대된 교역량을 감안하여 한도를 22억원으로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피해기업이 교역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역보험기준에 따라서 이를 보상하였으며, 그 금액이 1,248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통일부, 2016).

결국 경험보험제도 아래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가입제한 및 보험인수의 거절 등으로 인하여 정책보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2월 개성공단 중단사태와 같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피해기업에 대하여 전액배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대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이러한 국가의 예상하지 못한 손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본연의 기능에 의하여 비상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택식, 2017).

### 5) 무역보험제도 활용의 타당성 검토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남북경협의 비상위험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남북교역 금융지원에서 남북협력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만약 남북교역에 대한 위험담보와 교역활성화를 위해 무역보험지원규모를 확대한다면, 남북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보험의 담보 범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점은 두 보험의 성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북 무역보험의 법적 근거도 현재 확보되어 있으며, 2018년 무역보험 인수실적이 148.6조원 대로서 경험보험기금의 자산보유액에 비해 훨씬 큰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북 무역보험지원을 확대할 경우 무역보험이 담보하는 위험 범위가 현재보다 더 넓어지므로 무역보험기금 운용의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 일례로 지난 2006년 무역보험공사의 전신인 수출보험공사가 수출보험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계획 및 통일부에 보고하였다가 몇 개월 뒤 수출보험기금의 건전성 악화를 이유

로 이를 철회한 적이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수출보험공사와 한국전력 등 산업자원부 산하 8개 기관이 향후 대북사업에 최소 18조 9천여억원의 비용 지출을 예상하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고려할 때 무역보험기금의 운용상 건전성 악화 문제는 무역보험기금의 경험보험에의 적용 가부를 타진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김주연, 2011).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투자지원 사업은 북측의 비상위험 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 측정이 어렵고, 무역보험과는 달리 경험보험에서는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거래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상위험 발생 시에는 국가 재난상황에 준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따라서 무역보험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선행되고 엄격한 조건 하에 대북 무역보험기금이 운용된다면, 대북 무역보험 확대는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 및 경험보험과 공동보험 형태로 무역보험을 운용함으로써 대북 거래의 위험을 더욱 작게 분산시켜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연, 2011).

아울러 현행 경험보험에 무역보험제도를 활용할 경우 정부의 기존 대북무역보험 인수 지침이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동 지침은 외형적으로는 신용조사 및 사고조사 절차 간소화 등 대북 무역보험 인수를 위해 대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체 인수한도를 1천만 달러에 제한하고 무역보험공사에 일방적 부담만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대북무역보험 지원 등을 더욱 경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정웅, 2010). 따라서 향후 무역보험제도를 경험보험에 활용한다면 그 선결조건으로서 무역보험 상의 계약 한도를 조정하고 객관적인 조사평가와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인수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V. 북한의 개혁개방시 무역보험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 1. 남북경협의 단계별 무역보험 활용방안

남북간 경제협력에 따른 무역보험의 단계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1) 남북간 경제협력이 재개되고, 2) 점차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는 단계를 거쳐, 3) 전면적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 발전되는 단계적인 경제협력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 확대될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무역보험도 단계적으로 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단계로 경험재개 초기에는 남북한간 협정체결을 통한 적절한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지원한다. 2단계 경험의 점차 본격화되면 신용한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나아가 무역보험의 정상인수와 제3국 수출거래 인수 등으로 무역보험의 지원을 확대한다. 3단계 남북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 무역보험제도를 전수하는 등 적극적인 무역보험 지원을 도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신경제구상』지원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무역보험지원이 예상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 2. 급격한 개혁개방시의 긴급 무역보험 활용방안

북한의 개혁개방이 급격히 이루어 질 경우에는 앞서 검토한 시장논리에 의한 단계적 접근으로는 중국기업 및 일본기업 등과의 북한시장 선점경쟁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뒤쳐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통일 전에 동독지역에 서독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위험과 정치적 위험을 서독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 사례가 있다 (신동호, 2010). 이것은 정치적 위험의 보험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동서독의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의 경우도 북한의 급격한 개혁개방이 일어날 경우에는 북한지역에 남한기업들의 투자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위험과 정치적 위험을 우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특히 무역보험의 적절한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북한의 급격한 개혁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진출에 따른 정치적 위험의 보험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VI. 결론

## 1. 요약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간 경제협력에서 야기되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기존 교역 및 경험보험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역 및 경험보험 운영에 있어서 무역보험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비상위험 발생 시에는 무역보험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무역보험제도를 교역 및 경험보험에 활용할 경우, 그 선결조건으로서 무역보험 상의 계약 한도를 조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평가와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인수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급격한 개혁개방이 일어날 경우에는 북한지역에 남한기업들의 투자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위험과 정치적 위험을 우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무역보험의 적정한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 미래사회에 대한 시사점

현재 정제되고 있는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이 미래 어느 시점에는 다시 재개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존 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보험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역보험의 활용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안을 통하여 미래의 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협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종현, 2017. “남북경협보험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효과성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 2011.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보장을 위한 경협보험개선방안 검토- 국가재보험 및 무역보험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제6호, 법무부.
- 박명섭 외, 2014. 남북통일과 무역보험, 한국무역경영학회.
- 신동호, 2010. “통일 전후 동서독 보험제도의 통합이 현재의 개성공단 보험보호에 주는 시사점 연구”, 『경상논총』 제28권 4호, 한독경상학회.
- 신동호·이재열, 2016. “개성공단 남북경협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 제34권 1호, 한독경상학회.
- 안택식, 2016. “개성공단 경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2016년 개성공단 중단사태와 관련하여”, 『보험법연구』 10권 2호, 한국보험법학회.
- 안택식, 2017. “남북경협과 무역보험”,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 안철경·정인영, 2018.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조 개선과제”, KIRI리포트 444권, 보험연구원.
- 유창근, 2015. “경협보험의 개성공단 적용사례와 향후과제,“ 남북경협보험제도개정을 위한 세미나자료집, 국회 김성곤 의원실.
- 이무일, 2009. “남북협력기금의 현황과 과제”, 『수은 북한경제』 (2009년 가을호) , 한국수출입은행.
- 이지현, 2018. “남북경협보험 개선안에 대한 기존 논의와 향후 과제”, 『북한법 연구』, 현대경제연구원.
- 임성택, 2011.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사업의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 정 응, 2010. “남북교역 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수출보험의 과제,” 『무역보험연구』 제11권 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 통일부, 2011. 보도자료, 개성공단 공장투자 6개기업 경협보험금 지급 의결.
- 통일부, 2016.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결과, 2016.5.30.
- 통일부, 2017. 정부 개성공단 남북경협 기업지원대책 마련, 2017.11.10.
- 통일부, 2018. 2018 통일백서 (2018).
- 통일부, 2020. 남북협력기금통계 (2020).
- 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남북경협과 무역보험 지원방안”, 2018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학회 공동학술대회.

- 한국무역보험공사, 2020. 무역보험정보통계, 2020.6.
- 한국무역보험학회, 2018. “남북한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무역보험의 활용방안”, 한국 무역보험학회.
- 허 인, 2018.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경협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소고“, 『통일과 법률』제33호, 법무부.
- Mah, Jai S., 2018. “The Role of Inter-Korean Trad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무역보험학회 2018.9.14. 발표.
- Szalontai, Balazs and Changyong Choi, 2013. “China’s Controversial Role in Nor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The Dilemmas of Dependency”, *Asian Survey*, Vol. 53, pp. 269-291.

# The Effective Role of Trade Insurance in the Operation of Inter-Korea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System

Sang-Chul Yoon\* · Jihye Shon\*\*

## Abstract

This paper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inter-Korea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system, and analyzes the operating problems of the present insurance system. The paper offers a policy suggestion for the effective role of trade insurance in order to improve the operating problems of the present insurance system. In particular, we can consider the phased support system of trade insuranc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stag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case of the radical reform and open up of North Korea's economy, political risk as well as credit risk should be relieved for a limited time within 6 month or 1 year to promote the investment of South Korea's firms by trade insurance or government guarantees.

**Key word:** Inter-Korea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n reform and open; Trade insurance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ankook University, syoon@dankook.ac.kr

\*\* Co-Author, Student in Ph.D Program,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ankook University, jihye.shon77@gmail.com